

# 보조금 지원사업 특별감사 결과

## I. 감사개요

### 1. 감사목적

국·시비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비 집행 및 시공, 유지관리 실태 등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확보

### 2. 감사대상

2015년 1월 ~ 2016년 5월까지 시행된 보조금 사업

### 3. 감사기간 및 인원

가. 감사기간 : 2016. 5. 16 ~ 6. 3(15일간)

나. 감사인원 : 감사실장 외 4명

### 4. 감사중점사항

가. 사업수행 및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나. 사업의 검수 및 성과물 관리의 적정성

## II. 감사결과

### 1. 지적사항 총괄

행정상 조치(건)					재정상 조치(천원)		비고
계	개선	주의	교육	현지시정	계	회 수	
5	1	2	1	1	5,221	5,221	

## 2. 지적사항 세부내역

연월	내 용	조 치 사 항	처분사항	
			행정 조치	재정 조치
1	<p>■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소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함에도</li> <li>- ◎◎팀에서는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인 승강장안전문 설치와 관련하여 2015년 10월 (주)서진전력과 계약체결한 「승강장 안전문 전원설비 공사」에 대한 준공시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비 총 6,082,448원 중 일부금액을 근로자의 안전과는 무관한 공사안내판 설치에 사용(1,600,000원)하였음에도 감액조정 없이 준공처리 하였으며</li> <li>- △△팀에서도 2015년 11월 (유)우전과 계약체결한 「광주도시철도 1호선 9개역 소방시설 공사」에 대한 준공시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비 총 10,936,400원 중 일부금액을 근로자의 안전의 목적이 아닌 공사의 원활한 수행과 승객통제를 위한 공사안내판, 공사중표지, 가시설(파티션), 라바콘 등의 설치에 사용(3,110,000원)하였음에도 감액조정 없이 준공처리</li> <li>- 이와 관련하여 해당팀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안전관리비로 인하여 초과지급된 공사비를 즉시 회수조치토록 요구하였으며, 각 팀에서는 관련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초과지급된 총 5,221,000원을 감사기간내 회수조치 완료함</li> </ul>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철저 요구	현지 시정	회수 (5,221천원)
2	<p>■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소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 10월 (주)서진전력과 계약체결한 「승강장 안전문 전원설비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팀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착공시 제출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예외</li> </ul>	공사근로자의 임금을 적정 지급 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철저요구	주의	

연번 이 연	내 용	조 치 사 항	처 분 사 항	
			행 정 조 치	재 정 조 치
	<p>신청서'에서 정한 바를 어기고 상용근로자 외에 추가로 일용직근로자를 투입하였음에도 계약상대자로부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 통장을 제출받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노무비 지급대상에 해당 상용근로자를 포함하여 노무비를 청구토록 하고 있으나 2016년 2월 공사 준공시 계약상대자가 일용노무비 지급내역서만을 제출하였음에도 적정성 여부 검토없이 준공처리</p> <p>- △△팀에서는 2015년 10월 (주)정원커뮤니케이션과 계약체결한 「소태외 8개역 승강장 안전문 설치 건축공사」를 시행하면서 2016년 1월 기성청구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직접 노무비 지급내역에 대하여 적정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고 기성조서를 작성하였으며, □□팀에서는 기성금 지급시 기성청구서류에 직접노무비 지급내역 및 청구내역이 누락되어 있음에도 적정여부를 확인치 않았을 뿐 만 아니라, 노무비를 노무비 외의 대가와 구분하지 않고 기성금 일체를 공사관련 계좌에 일괄 입금하는 등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소홀</p> <p>- 또한 □□팀에서는 2015년 12월 (주)일광솔라에너지와 계약체결한 「승강장안전문용 신호설비 케이블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2016년 2월 선금 지급신청시 사용계획서에 선금으로 사용이 금지된 직접 노무비를 포함하여 신청하였음에도 조정 등의 조치없이 직접노무비를 포함한 신청금액 전부를 지급하는 등 선금지급 적정여부 검토 소홀</p>			

연번	내 용	조 치 사 항	처분사항	
			행정 조치	재정 조치
3	<p>■ 감독 및 검사업무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팀에서는 도시가스 배관 및 보일러 설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기계실 및 외벽 배관설치, 외벽 배관도장시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장구 미착용 및 안전시설 미설치 상태로 작업하였는데도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등 감독업무를 소홀</li> <li>-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에 따라 감독이 검사의 직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에너지절약 융복합사업 정산용역」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하면서 감독이 기성검사를 겸직하여 실시하는 등 검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실시</li> </ul>	향후 공사 시행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아울러 준공 검사시에는 검사자를 감독보다 상위직급자로 별도 지정하여 실시요구	주의	
4	<p>■ 승강장안전문 전원설비공사 업무처리 미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강장안전문 설치 부대공사중 하나인 「승강장안전문 전원설비 공사(이하 “전원설비공사”라 한다)」는 승강장안전문 전원공급을 위한 전기실에서 승강장안전문 UPS실까지의 전력간선 포설과 승강장 연단부 LED 조명이설 및 교체, UPS실내 전등·전열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2015년 10월 12일 (주)서진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여 2016년 1월 21일 공사완료</li> <li>- 이후 2016년 2월 예비 전력간선 확보를 위한 「승강장안전문 전원설비 이중화 공사」를 다시 발주하여 (주)지경과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li> <li>- 2016년 2월 시행한 승강장안전문 전원설비 이중화 공사는 당초 전원설비공사시 설계에 반영하였거나 공사기간 중 설계</li> </ul>	향후 타 팀과 연관된 사업 추진시 관련팀과의 충분한 협의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행정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 또한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요구	교육	

연번	내 용	조 치 사 항	처분사항	
			행정 조치	재정 조치
	<p>변경하여 추진하였다면 추가로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으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는 전원설비공사를 담당하는 ◎◎팀에서 최초 설계시 승강장안전문을 유지관리하는 △△팀과의 협의 부족 및 공사 진행 중 합동 현장점검 미실시 등 업무처리 미흡으로 나타난 결과이며, 이로 인해 승강장안전문 전원설비 이중화 공사 추가 실시에 따른 행정낭비를 초래</li> </ul>			
5	<p>■ 조달물품에 대한 하자관리 명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항에 물품은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발주부서에서는 물품에 대한 발주품의시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을 필요한 경우에만 임의로 하고 있으며, 조달물품에 대해서도 일반물품과 동일하게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의하여 정해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따르지 않고 지방계약법을 준용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임의로 정하는 등 일반물품과 조달물품에 대한 하자관리 절차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음</li> <li>- 일반물품과 달리 조달물품은 조달청에서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별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 기간동안 각 부서에서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달물품에 대한 하자관리 절차를 명확화</li> </ul>	<p>업무훈선 방지 및 조달물품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조달물품에 대한 하자관리 절차를 명확히 하여 시행</p>	개선	